

보도시점

(전매체) 9. 19.(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온누리상품권 정보제공 누리집 '전통시장 통통'에 계속 등재되어 혼란을 야기

\*\* 적발시 현장조사, 청문 등을 거쳐 가맹점 취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체 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카드형 10%)하고 있고, 구입방법 및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장수환 (044-204-7893)



대외주의



현행	개정안
<p>제9조의16·제9조의17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u>등록</u></li> <li>2. 법 제26조의6에 따른 가맹점 <u>등록의 취소</u></li> </ol>	<p><u>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제9조의18·제9조의19 (현행 제9조의16 및 제9조의17과 같음)</p> <p>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u>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u></p> <p>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별)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p> <p>제33조의2(권한의 위임)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u></li> <li>2. 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u>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u></li> </ol>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략)</li> <li><u>제9조의17제1항</u>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li> <li><u>제9조의17제2항</u>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li> <li>(생략)</li> </ol>	<p><u>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u></p> <p><u>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u></p> <p>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u>제9조의19제1항</u> ----- -----</li> <li><u>제9조의19제2항</u>----- -----</li> <li>(현행과 같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p>